

IV.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2. 외부강의등의 신고
3.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4. 위반에 대한 제재

FAQ

IV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개요

- ◆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고액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는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민관 유착요인으로 작용
 - 교직원등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원인이므로 **사례금 수수를 제한할 필요**
- ◆ 기업체나 이익단체로부터 받는 고액 사례금은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등 국민들의 우려 증대
- ◆ 반면, 교직원등의 외부강의등이 국민과의 소통, 정책의 홍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

통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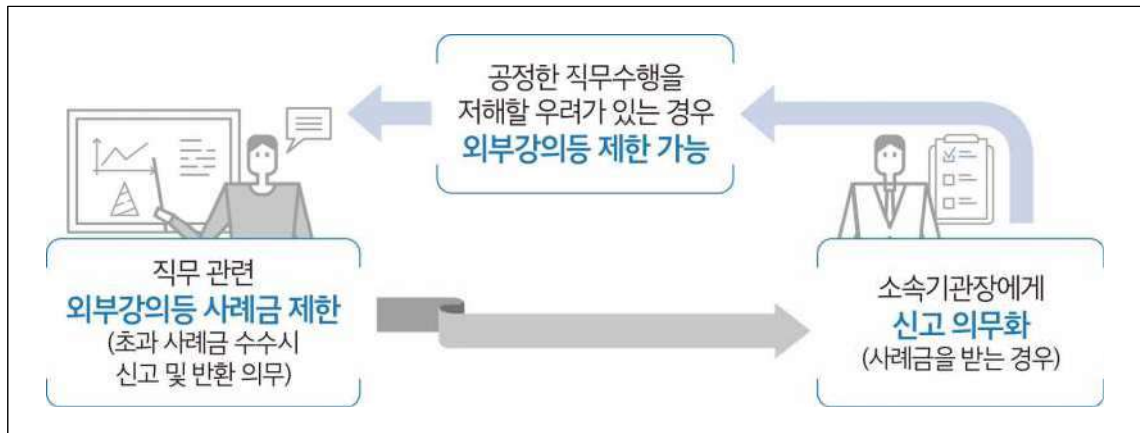
- 법 제8조에서는 교직원등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에서는 교직원등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형식으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정당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도 가지므로 수수 금지금품등에서 제외
 - ※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2 외부강의등의 신고



※ 기존에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20.5.27.이후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며,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교직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 ◆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 ◆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나. 신고 절차

- ◆ 교직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신고사항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서면 신고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

-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 ➔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

- ◆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절차

가.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1)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음	같음	같음	같음	X
같음	같음	같음	다름	○
같음	같음	다름	같음	○
같음	다름	같음	같음	○
다름	같음	같음	같음	○

※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 강의등 일자, 대상 및 내용(주제)을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 가능
-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 가능

2) 사례금 상한액

- ◆ 민간부문은 자율성 및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공공부문과 상한액을 달리 설정
-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
-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
-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1) 교직원등

- ◆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신고 사항 (시행령 제27조제1항)

- 신고 사항(176p 참고)
- 초과사례금의 액수,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2) 소속기관장

-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
- ◆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함
- ◆ 교직원등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

4

위반에 대한 제재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가. 징계처분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 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과사례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 의무는 불이행한 경우 이 법(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초과사례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

-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 법(제10조제5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 부과 대상

- ◆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FAQ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Q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Q 휴직자가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휴직자의 경우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외부강의등의 횡수제한은 없는지?

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횡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음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A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Q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다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A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는 없음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Q 강의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A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Q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A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Q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음

Q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교직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A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교직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이 도교육청 산하 연수원 또는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A

도교육청 혹은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별개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육청 산하 연수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및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이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V.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2. 청렴자문위원회
3. 교육 및 서약
4. 보호 및 보상
5. 징계 및 벌칙

IV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1

청탁방지담당관

가. 개요

-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등 중에서 부정청탁·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필요
 - 그 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업무 수행
- ◆ 법 제20조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필요
 - ※ 청탁방지담당관의 상담은 단순한 자문요청에서 금품등의 자진신고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은 신고자에 준해 철저히 보호

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 공공기관별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기관 사정에 따라 기존 ‘행동강령책임관’과 중복하여 지정 가능
 - 소속기관까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기타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담당 가능

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청탁금지법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2

청렴자문위원회

가. 개요

- ◆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청탁 해당 여부 및 선물 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해야 함
- ◆ 소속 교직원등 중에서 지정되는 청탁방지담당관은 단순한 자문에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 등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의 상담 업무까지 수행
 -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가능

나.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 청렴자문위원회의는 자문기구이므로 심의·결정에 공공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음
 - ※ 자문(심의) 사항
 - 부정청탁의 공개
 -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조치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 시행·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청렴자문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함
 - ※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 위원의 구성, 임기, 결격사유
 - 위원장 선임 및 권한
 - 회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 청렴자문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 전문가로 구성 필요

– 위원의 자격요건(예시)

-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부패방지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반부패·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 및 서약

- ◆ 공공기관의 장은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등을 신규채용하는 때에는 서약서를 받아야 함(서약서 양식은 붙임 참고)
-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장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의 수립·시행 가능

● 서약서 양식(예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기관명) 소속 공직자로서 ○○(기관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직 위 : 성 명 : (서명)

4

보호 및 보상

가. 개요

-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특성상 교직원등과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필요
-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각각 준용

나. 보호

1) 보호 대상 신고

📌 신고의 주체

-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교직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이건 '교직원등'이건 상관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는 모두 보호의 대상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다음의 신고자는 보호를 받지 못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

2) 보호 내용

☑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2조제1항제4호)

- ◆ (신변보호) 신고자, 그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가능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금지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제재 수준

-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그 외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금지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책임감면) 위반행위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의 감면 가능

-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면 요구 가능

※ 그 외 책임감면의 내용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그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다만,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는 제외)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의 사용자·인사권자는 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 고려 필요

다. 보상

1) 보상 대상 신고

📌 신고의 주체

-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주체가 ‘누구든지’ 하는 신고와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교직원등’의 자진신고로 구분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 법 제15조제5항·제6항에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한 경우로 규정하여 문언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보상금 지급 대상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법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등의 자진신고는 교직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 이행으로서의 신고이므로 법 제7조제2항·제9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등의 자진신고는 제외

◆ 다음의 신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함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함

☑ 지급 주체

- ◆ 포상금·보상금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주체임
 -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관의 추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 ◆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가능(시행령 제40조)
 - 조사기관은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사유를 확인

2) 보상 내용

☑ 포상금

- ◆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의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제1호)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제2호)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제3호)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제4호)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5호)

- ◆ **(지급기준)** 포상금은 2억원 이하
 - ※ 포상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함

☑ 보상금

- ◆ **(지급사유)**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
 -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의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 **(지급 신청 및 결정)** 신고자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필요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함

☑ **보상금·포상금에 공통되는 사항**

- ◆ **(신청 경합)**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
 -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 ※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
- ◆ **(감액)** 보상금·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일정한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가능**
 - ※ 고려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 **(환수)**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 ※ 환수사유
 -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5 징계 및 벌칙

가. 징계

-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교직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
-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재(형벌 또는 과태료)를 받은 교직원등에게 징계처분을 해야 함**
 -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가능(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 ◆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 법(제5조)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 ◆ **금품등을 수수한 후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인도한 경우 또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제재대상 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에서도 제외**

나. 과태료 부과 통보와 과태료 부과 취소

1) 과태료 부과 통보

-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이첩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에 이첩**
- ◆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지체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
 -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
 - ※ 유사 입법례(공직자윤리법)
 - 제30조(과태료)**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
 -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
-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제공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위반사실 통보 공문 예시

수신 ○○○○ 지방법원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 붙임. 1.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2. 첨부서류 목록 체크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우

전화번호

접수

팩스번호

첨부서류 목록 체크

(해당란에 ■ 표시)

1. 관련자의 진술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¹⁾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 ²⁾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목격자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관련자와의 대질을 원한 경우 대질 조사서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객관적인 증거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영상, 녹음물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그 밖의 자료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사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자료 전부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
4. 소속기관장의 의견	<input type="checkbox"/> 위 필수 첨부자료 중 제출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³⁾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에 관한 의견

1) 위반행위 상대방 또는 목격자가 신고자일 경우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갈음함

2)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제3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배우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행위자 등에 대하여서도 위반자에 준하여 진술을 확보하여야 함

3) 예컨대, 관련자의 진술 거부, 목격자 부존재, 위반자가 대질을 원하지 아니함, 증거물 제출 거부, 증거물 부존재,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부존재, 해명자료 미제출 등

2) 과태료 부과 취소

- ◆ 과태료 부과 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음
 -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
 - ※ 예시 :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취소규정(법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취소 가능
- ◆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
 -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의 취소신청은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 과태료 부과 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제출

다. 양벌규정

1)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개인, 단체 및 법인 포함)도 제재
- ◆ 「형법」의 경우 양벌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형법」상 증퇴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도 처벌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하면 함께 기소 필요

2) 업무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므로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은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제재
 - 법인은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제재 대상

3)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 면책사유

- ◆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위와 같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위 조항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또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위자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 ◆ 면책이 될 정도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노력한 경우 이에 대한 양형상 참작 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판단기준

- ◆ 다른 법령상의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 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

관련 판례

📌 ① 위반자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익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장철규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2017과5)

- ◆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운용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참고 3 |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Anti-corruption compliance)

- ◆ 미국의 경우 기업이 평소 얼마나 **효과적인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 및 양형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
 - 단순히 컴플라이언스를 마련하였다고 능사가 아니며 그 컴플라이언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가이드 상의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내용 요약

- 간부 등 상층부에서부터 부패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 및 정책이 확립되어 있을 것
- 명확하고 자세한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 사원에게 전파하고 습득시킬 것
- 조직 내에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자를 구비하는 등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컴플라이언스 수립 및 이행에 투입할 것
- 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
- 전사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등을 통해 회사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정책이 철저히 집행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소통할 것
- 회사구성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 개발과 향상 혹은 부패행위 적발 등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을 구비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명확한 징계절차 등을 구비할 것
- 의심되는 부패행위 적발 시 보복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걱정 없이 내부적인 고발이나 보고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제도를 구비해야 하며, 내부고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은폐하지 않고 철저히 효과적 내부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것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청탁방지 담당관 등”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제10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등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등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등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 (지진신고의 경우 부정 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 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처리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소속 (주소) 성명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신청일자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처리일자 처리내용 비고	조치일자 조치내용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p>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과 접수담당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법원 통보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 통보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 <input type="checkbox"/> 종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리내역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 료 확 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보존기간	년 (20 . . 까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고취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일반전화)	자택)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위 신고자 본인 은 20 . . . 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취하서 제출로 인하여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자격이 상실·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위와 같이 신고취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장 귀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서류 목록 체크

(해당란에 ■ 표시)

1. 관련자의 진술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⁴⁾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 ⁵⁾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목격자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관련자와의 대질을 위한 경우 대질 조사서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객관적인 증거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영상, 녹음물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그 밖의 자료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사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자료 전부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참조할 만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
4. 소속기관장의 의견	<input type="checkbox"/> 위 필수 첨부자료 중 제출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⁶⁾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에 관한 의견

4) 위반행위 상대방 또는 목격자가 신고자일 경우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같음함

5)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제3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배우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위반자에 준하여 진술을 확보하여야 함

6) 예컨대, 관련자의 진술 거부, 목격자 부존재, 위반자가 대질을 원하지 아니함, 증거물 제출 거부, 증거물 부존재,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부존재, 해명자료 미제출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 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 도 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결과	처리 일	비 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반환확인서

반환 받는 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에 대하여 반환을 확인합니다.

반환 연월일 : 20

인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물품등 폐기처분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인수일	폐기일	폐기사유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 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이름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